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1029 자동차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7. 26.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부과내역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별지 과세부과내역 순번 1 내지 17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년 이전부터 멸실인정된 2016. 9. 1.까지(다만 별지 과세부과내역 순번 4 기재 자동차는 2012. 1. 11. 폐차를 원인으로 말소될 때까지, 순번 8 기재 자동차는 2004. 1. 12. B에게 이전등록될 때까지, 순번 14 기재 자동차는 2004. 1. 10. B에게 이전등록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4. 6.부터 2012. 6.까지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에게 별지 과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은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학원의 부원장이던 C이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각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C은 2008. 10. 10. 그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유죄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차량이 C의 처분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멸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⑥ 법 제13조 제1항 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다. 판단

지방세법 제125조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이 사건 각 차량이 임의로 처분되어 원고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로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이 사건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장원정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별지>

- 과세부과내역 -

순번	과세물건	부과일자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1	(포터화물)	2004-06-10	27,070	0
		2005-06-07	27,070	0
		2006-06-08	27,070	0
		2007-06-07	27,070	0
		2008-06-07	27,070	0
		2009-06-10	27,070	0
		2010-06-07	27,070	0
		2011-06-10	27,070	0
		2012-06-07	27,070	0
2	(포터화물)	2004-06-10	27,070	0
		2005-06-07	27,070	0
		2006-06-08	27,070	0
		2007-06-07	27,070	0
		2008-06-07	27,070	0
		2009-06-10	27,070	0
		2010-06-07	27,070	0
		2011-06-10	27,070	0
		2012-06-07	27,070	0
3	(포터화물)	2004-06-10	27,070	0
		2005-06-07	27,070	0
		2006-06-08	27,070	0
		2007-06-07	27,070	0
		2008-06-07	27,070	0
		2009-06-10	27,070	0
		2010-06-07	27,070	0
		2011-06-10	27,070	0
		2012-06-07	27,070	0
		2004-06-10	27,070	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4	(포터화물)	2005-06-07	27,070	0
		2006-06-08	27,070	0
		2007-06-07	27,070	0
		2009-06-10	27,070	0
		2010-06-07	27,070	0
		2011-06-10	24,150	0
5	(목록20번 로 변경, 포터화물)	2004-06-10	27,070	0
		2005-06-07	27,070	0
		2006-06-08	27,070	0
		2007-06-07	27,070	0
		2008-06-07	27,070	0
		2009-06-10	27,070	0
		2010-06-07	27,070	0
		2011-06-10	27,070	0
		2012-06-07	27,070	0
6	(포터화물)	2004-06-10	27,070	0
		2005-06-07	27,070	0
		2006-06-08	27,070	0
		2007-06-07	27,070	0
		2008-06-07	27,070	0
		2009-06-10	27,070	0
		2010-06-07	27,070	0
		2011-06-10	27,070	0
		2012-06-07	27,070	0
7		2004-06-10	75,090	22,520
		2004-12-04	70,400	21,120
		2005-06-07	70,400	21,120
		2005-12-08	65,700	19,710
		2006-06-08	65,700	19,710
		2006-12-06	61,010	18,300
		2007-06-07	61,010	18,3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엑센트승용)	2007-12-06	56,320	16,890
		2008-06-07	56,320	16,890
		2008-12-08	51,620	15,480
		2009-06-10	93,860	28,150
		2010-06-07	89,170	26,750
		2011-06-10	89,170	26,750
		2012-06-07	89,170	26,750
8	(오기 정정)	2004-02-13	3,680	1,100
		2004-06-10	78,710	23,610
		2004-12-04	74,080	22,220
		2005-06-07	74,080	22,220
		2005-12-08	69,450	20,830
		2006-06-08	69,450	20,830
		2006-12-06	64,820	19,440
		2007-06-07	64,820	19,440
9	(엘타 승용) 오기정 정	2007-12-06	60,190	18,050
		2008-06-07	60,190	18,050
		2008-12-08	55,560	16,660
		2009-06-10	55,560	16,660
		2009-12-07	50,930	5,270
		2010-06-07	92,600	27,780
		2011-06-10	87,970	26,390
		2012-06-07	87,970	26,390
		2004-06-10	78,710	23,610
		2004-12-04	74,080	22,220
		2005-06-07	74,080	22,220
		2005-12-08	69,450	20,830
		2006-06-08	69,450	20,830
		2006-12-06	64,820	19,440
		2007-06-07	64,820	19,4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10	(오기 정정)	2007-12-06	60,190	18,050
		2008-06-07	60,190	18,050
		2008-12-08	55,560	16,660
		2009-06-10	55,560	16,660
		2009-12-05	50,930	15,270
		2010-06-06	92,600	27,780
		2011-06-10	87,970	26,390
		2012-06-07	87,970	26,390
11	(액센트 승용)	2004-06-10	75,090	22,520
		2004-12-04	70,400	21,120
		2005-06-07	70,400	21,120
		2005-12-08	65,700	19,710
		2006-06-08	65,700	19,710
		2006-12-06	61,010	18,300
		2007-06-07	61,010	18,300
		2007-12-06	56,320	16,890
		2008-06-07	56,320	16,890
		2008-12-08	51,620	15,480
		2009-06-10	93,860	28,150
		2010-06-07	89,170	26,750
		2011-06-10	89,170	26,750
		2012-06-07	89,170	26,750
12	(액센트 승용)	2004-06-10	75,090	22,520
		2004-12-04	70,400	21,120
		2005-06-07	70,400	21,120
		2005-12-08	65,700	19,710
		2006-06-08	65,700	19,710
		2006-12-06	61,010	18,300
		2007-06-07	61,010	18,300
		2007-12-06	56,320	16,890
		2008-06-07	56,320	16,8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2008-12-08	51,620	15,480
13	(엑센트승용)	2004-06-10	75,090	22,520
		2004-12-04	75,090	22,520
		2005-06-07	70,400	21,120
		2005-12-08	70,400	21,120
		2006-06-08	65,700	19,710
		2006-12-06	65,700	19,710
		2007-06-07	61,010	18,300
		2007-12-06	61,010	18,300
		2008-06-07	56,320	16,890
		2008-12-08	56,320	16,890
		2009-06-10	51,620	15,480
		2009-12-07	51,620	15,480
		2010-06-07	89,170	26,750
		2011-06-10	89,170	26,750
		2012-06-07	89,170	26,750
14	(엑센트 승용)	2004-02-13	3,620	1,080
15	(델타 승용)	2004-06-10	78,710	23,610
		2004-12-04	74,080	22,220
		2005-06-07	74,080	22,220
		2005-12-08	69,450	20,830
		2006-06-08	69,450	20,830
		2006-12-06	64,820	19,440
		2007-06-07	64,820	19,440
		2007-12-06	60,190	18,050
		2008-06-07	60,190	18,050
		2008-12-08	55,560	16,660
		2009-06-10	55,560	16,660
		2009-12-07	50,930	15,270
		2010-06-07	92,600	27,780
		2011-06-10	89,970	26,3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2012-06-07	87,970	26,390
16	[redacted]으로 변경, 델타승용)	2004-06-10	78,710	23,610
		2004-12-04	74,080	22,220
		2005-06-07	74,080	22,220
		2005-12-08	69,450	20,830
		2006-06-08	69,450	20,830
		2006-12-06	64,820	19,440
		2007-06-07	64,820	19,440
		2007-12-06	60,190	18,050
		2008-06-07	60,190	18,050
		2008-12-08	55,560	16,660
		2009-06-10	55,560	16,660
		2009-12-07	50,930	15,270
		2010-06-07	92,600	27,780
		2011-06-10	87,970	26,390
		2012-06-07	87,970	26,390
17	[redacted] (스타렉스 승합)	2004-06-10	61,750	0
		2005-06-07	61,750	0
		2006-06-08	61,750	0
		2007-06-07	61,750	0
		2008-06-07	61,750	0
		2009-06-10	61,750	0
		2010-06-07	61,750	0
		2011-06-10	61,750	0
		2012-06-07	61,750	0